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2. 변경시행일 : 2019.11.28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표시한다</u>.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9조(수익권의 분할)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<u>발행한다</u>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</u>.</p> <p>② ~ ④ <생략>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</u>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</u>.</p> <p>② ~ ④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예탁결제원과</u>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예탁결제원에</u>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생략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<생략></p>	<p>제14조(수익자명부)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</u>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과</u>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생략>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~ ⑧ <현행과 같음></p>
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생략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 ① ~ ② <생략>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 ① ~ ② <현행과 같음>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⑤ <생략> ⑥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생략> ⑦ ~ ⑧ <생략>	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 ~ ⑤ <현행과 같음> ⑥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 ⑦ ~ ⑧ <현행과 같음>

[변경등록신청서]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(시행령) 개정사항 반영 등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	-	자투자신탁의 신탁보수 및 수수료 인하 등
5. 운용전문인력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위험관리	위험관리전략 정정	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<u>결정하며, 일상적인 업무처리는 당사 내부의 운용업실무에 정해진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.</u>	운용역 개인의 독단의 의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자산운용전략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실무위원회 등에서 <u>결정합니다.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	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2.68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<u>13.12%</u> 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다소 높은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		1.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 - 보수인하 : 운용0.433 /판매(C)1.00,(C-e)0.50,(S)0.30	1.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 - 보수인하 : 운용0.195 /판매(C)0.70,(C-e)0.30,(S)0.10 - 클래스신설 : C-P1(0.40)/C-P1e(0.20)/C-P2(0.50)/C-P2e(0.25)

		2.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 - 선취 수수료 인하 : (A)1% 이내/(A-e)0.5% 이내 - 보수인하 : 운용0.54 /판매(A)0.50,(A-e)0.25,(C)1.00,(C-e)0.50 (S)0.25,(C-P)0.90	2.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 - 선취 수수료 인하 : (A)0.8% 이내/(A-e)0.4% 이내 - 보수인하 : 운용0.20 /판매(A)0.22,(A-e)0.11,(C)0.70,(C-e)0.30 (S)0.10,(C-P)0.50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2.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(시행 령) 시행령 개정 반영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 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 결제원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 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 기관에</u>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 해지		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②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 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정보고서 (2)자산운용보고서 (3) 자산보관· 관리보고서		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신탁업자는 ..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 결제원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...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<단서 생략>	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신탁업자는 ... 집합투자업자는 자투자 신탁의 수익자에게 자산보관·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...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< 단서 현행과 같음 >